TRADE & ORIGIN REPORT







05 활용하기 쉬운 FTA-PASS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 FTA-PASS 관리 정보의 주요 항목과 활용 목적 -













FTA-PASS 관리 정보의 주요 항목과 활용 목적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을 활용한 FTA 원산지 실무 절차는 1단계 자료 입력, 2단계 원산지 판정, 3단계 서류 작성 · 신청 단계로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시스템은 보통 입력, 처리, 출력의 과정을 거치는데, FTA-PASS도 동일한 과정이 적용된다. 즉 입력은 1단계 자료 입력, 처리는 2단계 원산지 판정, 출력은 3단계 서류 작성·신청과 매칭된다.

FTA-PASS 활용 절차 1단계(자료 입력)에서 오류 없는 정확한 자료를 누락 없이 등록 조건에 부합하게 입력하여 관리해야 하며, 2단계(원산지 판정)는 1단계에서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적용된 FTA 원산지 규정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며, 3단계(서류 작성 · 신청)는 1단계에서 입력한 자료와 2단계의 원산지 판정 결과를 근거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신청하게 된다.

1957년, William D. Mellin이 말한 "Garbage In, Garbage Out.(GIGO)"은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의미로 입력 자료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품질이 낮고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똑같이 결함이 있고 신뢰할 수 없으며 품질이 낮은 출력이 나온다는 원칙이다.

FTA-PASS를 활용한 FTA 원산지 관리의 1단계 자료 입력에서 정보의 누락, 항목의 누락, 항목의 오류 등이 발생한다면, 2단계 원산지 판정 결과에 누락이 발생한다거나 오류를 포함하게 되어 3단계 서류 작성 · 신청 단계에서 잘못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FTA-PASS의 입력 항목의 누락이나 오류가 FTA-PASS를 활용한 원산지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에 입력하는 관리 정보의 각 항목은 고유의 활용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면 해당 항목의 입력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은 FTA-PASS 기본형(재고관리 사용, 재고관리 미사용) 활용절차에서 관리되는 정보의 주요 항목과 활용 목적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FTA-PASS 기본형 관리 정보의 주요 항목 및 입력 목적〉

| | , | | | | | |
|----------|-----------|-----------------------|--------------|---------------|---|--|
| 기본형 | 형(재고) | 관리정보* | 주요 항목 | | 비고 | |
| | | 거래처 | 국가 | 판정 FTA 선정 | 해당 국가가 체결한 모든 FTA 판정 | |
| | | 기네시 | 모든 항목 | 필수 정보 | 필수 정보로 해당 정보가 누락된 | |
| | | 물품코드 | 모든 항목 | 필수 정보 | 경우 다른 정보를 등록 불가능 | |
| | 공통 | | 세번 | 원산지결정기준 선정 | 세번으로 원산지결정기준 | |
| 기준 정보 | | HS코드 | 물품 대(중)분류 | 원산지결정기준 선정 | 6단위 세번의 하위 분류 | |
| | | | 기준년도 | FTA | FTA 마다 적용 HS 기준년도 상이 | |
| | 미사용 자재명세서 | | 모든 항목 | 원산지 판정 요소 | 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중요 요소 | |
| | | 미사용 자재명세서 매입처, 매입일 | | 구매단가 확인 | 구매단가 정보의 매입처, 물품번호, 매입일 조건을 기준으로 대응 선정 | |
| | 사용 | 자재명세서 | 모든 항목 | 원산지 판정 요소 | 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중요 요소 | |



| 기본 | 형(재고) | 관리정보* | 주요 항목 | 목적 | 비고 |
|----------|-------------|-------|-------------|------------|-------------------------|
| | 공통 | 근거서류 | 원산지 | 재료의 원산지 확인 | 매입처, 물품번호, 시작일, 종료일 |
| пшо | 미사용 | 구매단가 | 구매단가 | 재료의 가치 산정 | 부가가치기준, 최소기준 판정 비율계산 |
| | 미시증 | 판매단가 | EXW, FOB | 제품의 가치 산정 | 부가가치기준, 최소기준 판정 비율계산 |
| 거래 정보 | | 구매원장 | 단가 | 재료의 가치 산정 | 부가가치기준, 최소기준 판정 비율계산 |
| | 사용 | 수불부 | 원장번호, 항번 | | 재료의 가치 산정(수불구분:구매입고) |
| | √1 5 | 표준재료비 | 표준단가 | 재료의 가치 산정 | 수불부를 관리하지 않는 재료에 한함 |
| | | 매출원장 | 단가 | 제품의 가치 산정 | 부가가치기준, 최소기준 판정 비율계산 |

^{*} 관리정보는 이해 편의를 위해 메뉴 명칭을 사용

FTA-PASS 불완전 정보 입력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

■ 원산지 판정실패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① 완제품의 '세번'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관련항목)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메뉴 | 항목 |
|------|--------|--------------------|----|
| 기본형 | 공통 | 기준정보 〉 HS코드 | 세번 |

- (개요) 원산지 판정에 적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에 따라 정해져 있다. 따라서 완제품 세번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판정을 수행할 수 없다.
- (현상) 완제품의 세번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FTA-PASS는 [판정관리 〉일괄판정] 메뉴의 '판정일자/상세' 항목에서 '판정실패'로 표기한다. '판정실패' 텍스트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판정실패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 (해결) [기준정보 〉 HS코드] 메뉴에서 완제품의 세번을 등록한다.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 | 값 |
|------|--------|--------------------|----|--------|
| 기본형 | 공통 | 기준정보 〉 HS코드 | 세번 | 870895 |

② 완제품의 '물품 분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관련항목)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메뉴 | 항목 |
|------|--------|--------------------|--------------|
| 기본형 | 공통 | 기준정보 〉 HS코드 | 물품 대분류 / 중분류 |

- (개요) FTA의 원산지 규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은 대부분 6단위 세번에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물품에 따라 6단위 세번 이하의 분류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싱가포르 FTA의 제8525.80호 세번의 경우 '텔레비전 카메라'와 '그 외 카메라'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물품의 분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판정을 수행할 수 없다.

| 세번 | 분류 | 원산지결정기준 |
|--|----------------|---|
| 제8525.80호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 가. 텔레비전 카메라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 레코더 | 나. 기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25호의 것은 제외한다) 로부터 생산된 것 |

- (현상) 완제품의 세번 대분류/중분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FTA-PASS는 [판정관리 > 일괄판정] 메뉴의 '판정일자/상세' 항목에서 '판정실패'로 표기한다. '판정실패' 텍스트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판정실패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 (해결) [기준정보 〉 HS코드] 메뉴에서 완제품의 세번 대분류/중분류를 등록한다.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 | 값 |
|------|--------|--------------------|--------|-------------|
| 기본형 | 공통 | 기준정보 〉 HS코드 | 물품 대분류 | 가. 텔레비전 카메라 |

③ 완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세번'을 등록한 경우

- (관련항목)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메뉴 | 항목 |
|------|--------|--------------------|----|
| 기본형 | 공통 | 기준정보 〉 HS코드 | 세번 |



- (개요) HS코드는 HS 품목분류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약칭 Harmonized System)에 존재하는 부호를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 번 제8708호의 경우 소호 제8708.11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 (현상) HS 품목분류표에 존재하지 않는 세번(예: 제8708.11호)을 등록하는 경우, FTA-PASS는 [판정관리 〉일괄판정] 메뉴의 '판정일자/상세' 항목에서 '판정실패'로 표기된다. '판정실패' 텍스트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판정실패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 (해결) [기준정보 〉 HS코드] 메뉴에서 해당 물품의 세번을 정정한다.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 | 값 |
|------|--------|--------------------|----|--------|
| 기본형 | 공통 | 기준정보 〉 HS코드 | 세번 | 870810 |

■ 원산지 판정결과 불충족 오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① 원재료, 중간재의 재료비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부가가치기준 불충족)

- (관련항목)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메뉴 | 항목 |
|------|--------|---------------------|-----------------------------|
| | 미사용 | 거래정보 〉 구매단가 | 구매단가 |
| 기본형 | 사용 | 거래정보 〉 구매원장 | 단가 |
| | 시승 | 거래정보 〉 수불부 | 원장번호, 항번 (수불구분:구매입고) |
| 기본형 | 공통 | 시스템관리 〉 환경설정 | 중간재 단가정의 (중간재 판정 시) |

- (개요)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필요하다
- (현상) 부가가치기준을 판정하는데 필요한 재료의 재료비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제품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FTA-PASS는 FTA 활용기업의 관리 오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 결과를 '불충족'으로 적용한다.
- (해결) [판정관리 〉 판정이력] 메뉴에서 해당 원산지 판정결과 상세내역에서 어떤 원재료의 재료비가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단가를 등록한다.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메뉴 | 항목 | 값 |
|------|--------|--------------------|------|-----|
| 기본형 | 미사용 | 거래정보 〉 구매단가 | 구매단가 | 227 |

② 원재료, 중간재의 '세번'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세번변경기준 불충족)

- (관련항목)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 항목 |
|------|--------|--------------------|----|
| 기본형 | 공통 | 기준정보 〉 HS코드 | 세번 |

- (개요) 원산지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세번이 필요하다.
- (현상) 세번변경기준을 판정하는데 필요한 재료의 세번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완제품과 재료(원재료, 중간재)의 세번이 변경되었는지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제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때 FTA-PASS는 제품의 원산지 판정 결과를 '불충족' 즉, 비원산지(역외산)으로 판단한다.
- (해결) [기준정보 〉 HS코드] 메뉴에서 누락된 재료(원재료, 중간재)의 세번을 등록한다.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메뉴 | 항목 | 값 |
|------|--------|--------------------|----|--------|
| 기본형 | 공통 | 기준정보 〉 HS코드 | 세번 | 870895 |

■ 원산지 판정 대상 완제품이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① 완제품의 '판매가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련항목)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메뉴 | 항목 |
|------|--------|--------------------|-------------|
| 기본형 | 미사용 | 거래정보 〉 판매단가 | EXW, FOB 가격 |
| 기본형 | 사용 | 거래정보 〉 매출원장 | 단가 |

- (개요) FTA-PASS에서 원산지 판정 대상 완제품은 판매정보(판매단가, 매출원장)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 (현상) 판매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판정관리 〉 일괄판정] 메뉴에서 판정 대상 목록으로 출력되지 않는다.
- (해결) 기본형의 재고관리기능을 미사용하는 경우 [거래정보 〉 판매단가] 메뉴에서 원산지 판정 대상 FTA에서 요구되는 누락된 완제품의 EXW 또는 FOB 가격을 등록한다. 기본형의 재고관리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정보 〉 매출원장] 메뉴에서 누락된 완제품의 단가를 등록한다.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메뉴 | 항목 | 값 |
|------|--------|--------------------|--------|-----|
| 기본형 | 미사용 | 거래정보 〉 판매단가 | FOB 가격 | 227 |
| 기본형 | 사용 | 거래정보 〉 매출원장 | 단가 | 227 |

② 완제품의 '자재명세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관련항목)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메뉴 | 항목 |
|------|--------|---------------------|-------|
| 기본형 | 공통 | 기준정보 〉 자재명세서 | 모든 항목 |

- (개요) 제품(완제품)의 원산지 판정은 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원재료, 중간재) 정보를 근거로 수행된다. 따라서 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와 소요량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자재명세서 정보가 필요하다.
- (현상) 제품의 자재명세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 판정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판정관리 〉 일괄판정] 메뉴에서 판정 대상 목록으로 출력되지 않는다.
- (해결) [기준정보 〉 자재명세서] 메뉴에서 누락된 제품의 자재명세서를 등록한다.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 항목 |
|------|--------|---------------------|-------|
| 기본형 | 미사용 | 기준정보 〉 자재명세서 | 모든 항목 |
| | 사용 | 기준정보 〉 자재명세서 | 모든 항목 |

■ 원산지 판정 대상 FTA가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① 완제품 HS코드의 기준년도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관련항목)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메뉴 | 항목 |
|------|--------|--------------------|------|
| 기본형 | 공통 | 기준정보 〉 HS코드 | 기준년도 |

- (개요) FTA마다 FTA 체결 협상 결과에 따라 활용하는 HS 기준년도가 상이하다. 또한 FTA 체결국가간 기준년도를 협의하여 변경하기도 한다.

| 항목 | 기준년도 | 적용 FTA |
|------|--------|---|
| | HS2007 | EU, 튀르키예, 뉴질랜드, 인도, 페루, 영국 |
| | HS2012 |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중국, 칠레, 싱가포르, 중미, 이스라엘 |
| 기준년도 | HS2017 | 아세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EFTA, 필리핀 |
| | HS2022 | RCEP |

- (현상) FTA-PASS에서는 대상 국가와 체결한 모든 FTA를 대상으로 원산지 판정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소재한 수입자에게 수출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판정한다. 이때 수출 물품의 세번에 대해 HS 기준년도를 2022년도만 등록한 경우,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를 대상으로는 판정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누락된다.
- (해결) [기준정보 〉 HS코드] 메뉴에서 누락된 HS기준년도의 세번을 등록한다.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 항목 |
|------|--------|--------------------|-------|
| 기본형 | 공통 | 기준정보 〉 HS코드 | 모든 항목 |

② 거래처의 '국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관련항목)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메뉴 | 항목 |
|------|--------|-------------------|----|
| 기본형 | 공통 | 기준정보 〉 거래처 | 국가 |

- (개요) FTA-PASS는 거래처가 소재한 국가와 체결한 모든 FTA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판정한다.
- (현상) FTA-PASS에서 거래처의 국가가 베트남에 소재하여 국가 항목에 'VN'을 등록해야 하는데 'US'로 등록하는 경우, 베트남과 체결한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판정하지 않고 한-미 FTA를 대상으로 판정하게 된다.
- (해결) [기준정보 〉 거래처] 메뉴에서 해당 거래처의 국가 항목을 수정한다.

| 활용유형 | 재고관리기능 | 메뉴 | 항목 | 값 |
|------|--------|-------------------|----|----|
| 기본형 | 미사용 | 기준정보 〉 거래처 | 국가 | VN |

FTA-PASS의 메뉴 체계, 관리 정보, 활용 절차를 자세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상기 기재된 사항 이외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당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